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206
------	------

2021. 2. 25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2월 5일, 권영희 의원 외 10명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- 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】
 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21. 2. 25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권영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청년들이 취업 후에도 낮은 만족도와 적성 불일치로 퇴사 및 이직을 선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비대면 문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(AI, Artificial Intelligence)로 확산되는 AI 면접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들에게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9조제2항).

나. 청년고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변화된 채용과정을 반영하는 ‘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(안 제11조제2항제3호)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상담, 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채용환경 변화에 맞춰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발의 배경

-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온택트¹⁾ 방식으로 경제·사회구조가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으며, 인재 채용방식에서도 AI(인공지능)영향평가와 AI면접, 화상면접 등 비대면 기술의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임.
- 비대면 채용은 다수인원 집합 시 발생하는 코로나19 위험성을 최소화

1) 비대면을 일컫는 ‘언택트(Untact)’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‘연결(On)’을 더한 개념으로,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킴. 이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흐름이다.(네이버 시사상식사전)

할 수 있고, 지원자의 역량, 특성, 직군적합도 등을 판단할 때 인간의 주관적인 선입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투명한 채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²⁾.

- 이미 대기업들은 연 1~2회 개최하는 대규모 정기공개채용 규모를 줄이고 시간·비용의 절약과 효율적인 인재관리가 용이한 수시채용을 확대하는 식으로 채용방법을 바꾸고 있음³⁾.
- 이처럼 국내 채용시장에서 ‘수시채용’ 과 ‘비대면 방식’ 이 디지털 사회의 뉴노멀(New Normal, 새로운 기준)로 떠오르고 있어 채용변화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지원 전략이 필요함.

다. 청년대상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근거 신설(안 제9조제2항)

- 개정안은 청년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직업상담·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음.
- 최근 연구에 따르면, 취업에 성공한 청년 2명중 1명(50.2%)이 첫 직장 입사 1년도 되기 전 퇴사하고, 4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은 12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⁴⁾.

2)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(224명)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, 응답자의 44.9%가 올해 상반기 비대면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 답했으며, 57.3%는 하반기 비대면 채용 진행 계획을 밝혔고, 이들 가운데 71.7%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채용을 유지할 계획 이라고 응답함(취업포털 인크루트(2021.2.7.) 설문조사 결과).

3) 실제로 국내 4대기업(삼성그룹, 현대차그룹, SK그룹, LG그룹) 중 삼성만이 상·하반기 공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기공채를 폐지하였으며, 정기공채를 유지하는 기업이 10 대그룹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(뉴시스, 2020. 5. 26.).

4) 황광훈, 「첫 일자리 이탈영향 요인분석」, 『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』, (2020.7.)

- 청년의 조기퇴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과 직장의 불일치와 적성과의 부조화였음.
- 청년이 자신의 적성, 능력 등에 맞춰 직업을 선택하고 구직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직업에 대한 적합도와 만족도를 높여 조기퇴사와 이직을 줄이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춰 청년들이 구직준비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적성과 강점, 성향과 가치를 파악해 직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실현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임.
- 한편, 서울시는 대학,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한 취·창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, 진로지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·제공하고 있음(2021년 대학 일자리 협력 지원 사업예산 14억원).

라.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근거 마련(안 제11조제2항제3호)

-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‘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(AI면접 체험관 운영, AI면접특강 제공 등)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.
-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면접방식을 조사한 결과, 올해는 7곳(28%)이 비대면 채용방식을 채택했으며, 이중 1곳이 AI면접, AI역량검사를 계획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과 AI프로그램을 이용한

비대면 방식의 채용양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.

<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대면채용 현황(2개년)>

연도	온라인 인적성 검사, 화상면접		AI영향검사, AI 면접	
	기관수	기관명	기관수	기관명
2020	5	디지털재단(화상면접), 공공보건의료재단(온라인인성검사), 기술연구원(온라인 인적성검사, 자가격리자, 해외거주자 등 선별적 화상면접), 관광재단(일부채용 비대면 면접)	3	농수산식품공사(AI역량검사) 서울주택도시공사(AI면접) 서울산업진흥원(AI역량검사)
2021	6	서울시설공단(일부채용 화상면접), 문화재단(비대면화상면접), 50플러스재단(비대면화상면접), 공공의료재단(온라인인성검사), 서울기술교육원(온라인인적성검사)(해외거주, 자가격리자 화상면접), 관광재단(일부 비대면 면접)	1	서울주택도시공사(AI면접),

※ 서울시 26개 투자·출연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공함(2021.2.).

-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AI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이 450개로 50% 증가⁵⁾했으며, 대학취업센터 등 교육기관과 사설업체에서 AI 면접 등을 대비한 훈련프로그램 역시 늘어나고 있음.
- 그런데, 서울시의 비대면 채용관련 청년지원 사업은 일방향의 교육 중심 면접특강이 대부분으로,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채용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.
-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청년고용촉진과 확대를 위해 비대면 면접 준비 등에 대한 채용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.

5) AI 역량검사 개발업체 마이다스인 발표자료(2021.2.)

- 다만, 조례에 AI면접 등 구체적인 면접형태를 명시하는 것은 비대면 채용 지원영역을 자칫 축소시킬 수 있어 지원영역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비대면 <u>면접 준비과정 지원(AI 면접 체험관 운영, AI 면접특강 제공 등)</u> ③ (현행과 같음)	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1. ~ 2. (개정안과 같음) 3. 비대면 <u>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</u> ③ (개정안과 같음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서울시의 청년대상 비대면 채용시장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AI 면접 등 구체적 면접형태를 명시하기보다 ‘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AI 면접 체험관 운영, AI 면접특강 등 구체적인 비대면 채용형태 내용을 삭제하고, ‘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’ 을 ‘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’ 으로 수정함(안 제11조제2항제3호)

Ⅵ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1명, 전원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06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2월 25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시의 청년대상 비대면 채용시장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AI 면접 등 구체적 면접형태를 명시하기보다 ‘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AI면접 체험관 운영, AI면접특강 등 구체적인 비대면 채용형태 내용을 삭제하고, ‘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’을 ‘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’으로 수정함(안 제11조제2항제3호).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(AI 면접 체험관 운영, AI 면접특강 제공 등)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<u>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</u>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른” 을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” 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·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교육기관 활용) ①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<p>② 시장은 <u>제1항에 따른</u> 지원을 하는 경우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~ 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(교육기관 활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<u>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·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시장은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</u> 지원을 하는 경우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